

2022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기본계획

※ 본 <2022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기본계획>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추후 발표되는 <모집요강>을** 우리대학 입시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주요사항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 ▶ 일반 재외국민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54명
- ▶ 12년 전교육과정 이수자, 새터민 전형유형별 최대모집 가능인원 각 75명

세부 모집인원

[일반 재외국민 모집인원]

- ▶ 2022학년도 : 인문·영화영상 33명 / 자연 21명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 최대모집 가능인원]

- ▶ 2022학년도 : 인문·영화영상 47명 / 자연 28명

[새터민 최대모집 가능인원]

- ▶ 2022학년도 : 인문·영화영상 45명 / 자연 30명

일반 재외국민 지원자격

- ▶ 학생 이수 기간 : 고교 1개년 포함 중·고교과정 3년 이상
- ▶ 체류 기간
 - 학생 :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 부모 :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반영비율

- ▶ 일반 재외국민 /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 / 새터민 공통

구분	계열	과목(반영비율)	비고
1단계	인문계/영화영상	국어(50%) + 영어(50%)	필답고사
	자연계	수학(50%) + 영어(50%)	
2단계	전체	서류심사(Pass/Fail)	서류심사

전형방법

- ▶ 인문계·자연계·영화영상
 - 1단계 : 필답고사 100%
 - 2단계 : 서류심사 100%

필답고사 범위 및 수준

- ▶ 교과서 및 EBS교재 활용한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

1. 2022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주요사항

가. 모집구분 및 선발인원

모집구분		인문계/ 영화영상	자연계	합 계	비고
일반 재외국민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의 자녀	33명	21명	54명	모집단위별로 선발, 신입생 입학정원의 2% 이내 (정원외 모집)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		47명	28명	-	모집단위별로 최대모집 가능인원 (정원외 모집)
새터민(북한이탈주민)		45명	30명	-	

※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을 불허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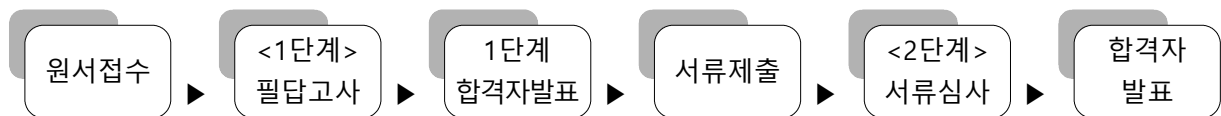
나. 전형방법

▶ 일반 재외국민,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 새터민 모두 계열에 따른 동일한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적용

계열구분	전형형태	필답고사 과목 및 반영비율		서류심사	비고
인문계 · 자연계 · 예체능(영화영상학과)	1단계	인문계/ 영화영상학과	국어 50%+ 영어 50%	-	5배수 선발
		자연계	수학 50%+ 영어 50%	-	
	2단계			P/F	

다. 전형절차

▶ 인문계, 자연계, 영화영상학과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학	계열	모 집 단 위		모집인원	최대모집 가능인원	
				일반 재외국민	12년전교육 과정 이수자	새터민
불 교	인 문	불교학부		-	1	1
문 과	인 문	국어국문 · 문예창작학부	국어국문학, 문예창작학	2	2	2
		영어영문학부	영어문학, 영어통번역학	2	3	3
		일본학과		1	2	2
		중어중문학과		2	5	5
		철학과		-	1	1
		사학과		1	2	2
이 과	자 연	수학과		1	2	2
		화학과		1	2	2
		통계학과		1	2	2
		물리 · 반도체과학부	물리학, 반도체과학	1	1	1
법 과	인 문	법학과		2	3	3
사회과학	인 문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	2	2	2
			행정학	2	2	2
			북한학	-	1	1
		경제학과		2	2	2
		국제통상학과		2	3	3
		사회 · 언론정보학부	사회학	-	1	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2	3	3
		식품산업관리학과		-	1	1
		광고홍보학과		2	2	3
경찰사법	인 문	사회복지학과		-	1	1
		경찰행정학부	경찰학, 산업보안, 범죄과학, 교정학	3	3	-
경 영	인 문	경영학과		3	3	3
		회계학과		1	1	1
		경영정보학과		1	1	1
바 이 오 시 스템	자 연	생명과학과		-	1	1
		바이오환경과학과		-	1	1
		의생명공학과		1	1	2
		식품생명공학과		1	1	1
공 과	자 연	전자전기공학부		3	3	3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	3	3	3
			정보통신공학과	1	1	2
		건설환경공학과		-	1	1
		화공생물공학과		2	2	2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2	2	2
		건축공학부	건축공학, 건축학	-	1	1
		산업시스템공학과		2	2	2
		멀티미디어공학과		-	1	1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1	1	1
사 범	인 문	국어교육과		1	-	-
	자 연	수학교육과		1	-	-
예 술	예체능	영화영상학과		2	2	2
계				54	-	-

모집관련 유의사항

- 지원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모집 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지원하기 바랍니다.

- 1) 사범계열 및 교직설치학과는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자격기준(전공성적, 교직과목성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등)을 충족해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므로 본교 『교직과정 이수 가이드』를 반드시 참고할 것
- 2) 경찰행정학부 지원자 중 경찰 또는 공안기관 등에 진로를 희망하는 자는 「경찰공무원 임용령과 시행규칙」 등의 임용자격을 참조할 것
- 3) 불교대학은 타과로 전과는 불가하고 복수전공은 가능
- 4) 바이오시스템대학 신입생은 서울 본교 소속 바이오메디캠퍼스(일산)에서 수업함을 원칙으로 함
- 5) 학부 중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물리·반도체과학부, 경찰행정학부는 졸업시점에 전공을 결정하고, 영어영문학부, 건축공학부는 2학년 진급 시 전공 결정
- 6) 영화영상학과는 예체능계열이나 실기평가를 하지 않으므로, 인문계열과 같은 방식으로 선발함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미충원 시 충원 원칙

- 각 모집구분의 특정 모집단위에서 모집인원 만큼 합격자를 충원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과 순서에 따라 충원합니다.

1. 해당 미충원 모집단위가 속한 학부 내 타 모집단위 건제순으로 1명씩 순차적으로 충원합니다. 또한 다른 모집단위에서 1명을 이월 받은 적이 있는 모집단위에 추가로 충원 기회가 올 경우 다음 순위의 모집단위에게 그 기회를 순차적으로 이월합니다.

(예시 : 정치행정학부의 행정학 전공 미충원 시 정치외교학 전공에서 우선 충원하되, 미충원 시 북한학 전공에서 충원해야 하나 북한학 전공 정원이 15명이므로 학부(과) 정원의 10%를 초과하여 충원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경제학과로 충원 우선순위를 이월합니다.)

2. 1번 원칙으로 충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과대학 내 모집단위 건제순으로 1명씩 순차적으로 충원합니다.
3. 1번, 2번 원칙으로 충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속 계열(인문, 자연, 예체능) 내 단과대학 및 모집단위 건제순으로 1명씩 순차적으로 충원합니다.

※ 영화영상학과 미충원 시에는 인문계열 건제순으로 충원합니다.

- 전제 조건 : 일반 재외국민의 충원합격자 모집단위별 최대인원은 전체 입학정원의 2% 이내, 각 모집단위(학부, 학과) 정원의 10% 이내로 합니다. 각 모집단위(학부, 학과)별 정원은 우리 대학 금년도 수시와 정시의 정원내 모집인원 합계로 합니다(모집요강 참조).

3. 전형일정

구분	일정
원서접수(공통)	2021년 7월 5일(월) ~ 7월 9일(금) 중 3일 이상
1단계 필답고사(인문계, 자연계, 영화영상)	2021년 7월 ~ 8월 예정
1단계 합격자 발표(인문계, 자연계, 영화영상)	
서류제출(1단계 합격자)	
서류심사(지원자격 심사)	
최초합격자 발표(공통)	2021년 8월 예정
합격자 등록예치금 납부	2021년 12월 예정

4. 필답고사 및 서류심사 안내

가. 필답고사 안내

계열	과목	형식 및 범위	
인문계 · 영화영상	국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내용과 범위 ※ 객관식으로 출제	● EBS교재를 활용한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
자연계	수학		
공통	영어		

나. 서류심사 안내

▶ 지원자 제출서류 검토 및 지원자격 심사

5. 지원자격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2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로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고등학교 졸업년도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자격 구분	세부 구분/특기사항	자격 요건
일반 재외국민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의 자녀)	외국근무 공무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 근무하는 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 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외국근무 상사주재원의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자의 자녀	
	정부유치 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현지법인 근무자의 자녀	
	현지 자영업자의 자녀	
	교육, 출장을 목적으로 체류한 자의 자녀 (※ 유학생의 자녀 제외)	
	해외 선교사의 자녀	
	영주권 취득 외국 교포 자녀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	우리나라 초·중·고(6-3-3)와 12년 교육연한을 기준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및 결혼이주민
새터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국내·외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하였거나 이와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북한이탈주민 (※ 검정고시 지원가능)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개정예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도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 지원자격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자의 해외재학기간은 보호자(부모)의 해당국가 거주(근무)기간 내에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6. 최소 외국 재학·근무·체류기간

- ▶ 외국근무기간 : 재직증명서상 외국발령일과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출국일 중 현재와 가까운 일자로부터, 재직증명서상 국내발령일과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입국일 중 현재와 먼 일자까지의 기간
- ▶ 외국체류기간 : 출입국증명서 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기간을 제외한 기간

자격 구분	최소 해외 재학 · 근무 · 체류기간(단위 : 연)				
	학 생		해외근무자		해외근무자의 배우자
	재학	체류	근무	체류	체류
일반 재외국민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의 자녀)	3	학생 이수 기간의 3/4	3	학생 이수 기간의 2/3	학생 이수 기간의 2/3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	12	12	-	-	-
새터민	제한 없음		-	-	-

- 1) 위 기간은 해외근무자의 근무·체류기간과 학생의 재학·체류기간의 중첩기간 중 고교 1개년을 포함한 최소기간을 의미합니다.
- 2)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합니다.)
- 3)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4)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의 재학기간은 고교 졸업까지의 전체 기간입니다.

7. 자격인정 공통사항

가. 외국학교 인정기준

- 1) 외국학교는 국외에 소재한 정규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2) 외국학교 과정은 해당국 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 과정만을 인정합니다.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목적의 교육기관, 대학예비과정,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사이버·통신 교육과정 불인정)
- 3) 국내외 검정고시(미국·캐나다의 GED, 중국의 자학고시 등 포함) 출신자는 외국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자로 불인정합니다. (※ 단, 새터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 인정)
- 4) 초·중·고교 수학기간은 현행 대한민국 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외국학교 재학기간 심사기준

- 1) 보호자(부모)의 해외 근무기간과 지원자의 재학(고교 1개년 과정포함) 중 중첩되는 기간이 재외국민 자격요건 인정기간입니다. (보호자(부모) 근무와 학생의 재학의 미중첩기간 중 지원자의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재외국민 자격요건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나, 총 이수학기로는 인정)
- 2)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3)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4)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재외국민 재학기간 관련 지원자격 인정 예>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 학교																									23개 학기
외국 학교								누락									누락					누락			

- ※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 ※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 ※ G11-1의 누락은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일반 재외국민 재학기간 관련 지원자격 불인정 예>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 학교																									22개 학기
외국 학교							누락	누락									누락				누락				

- ※ 중복학기 G2-2~G3-1중 한 개 학기만 G4-2~G5-1 중 한 개 학기 대체 가능
- ※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 ※ G11-1의 누락은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5) 해외재학기간 산정기준

-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단 해당 1개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6) 유급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다. 자격인정 기준시점 - 외국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구 분	지원자 재학·체류 자격종료시점	보호자(부모) 근무·체류 자격종료시점	비 고
기 졸업자	지원자 졸업일	지원자 졸업일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지원자 2021년 8월 졸업예정일	지원자 2021년 8월 졸업예정일	조건부 합격자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지원자 2022년 2월 졸업예정일	지원자 2022년 2월 졸업예정일	조건부 합격자
2022년 3월 졸업예정자(일본 등)	지원자 2022년 3월 졸업예정일	지원자 2022년 3월 졸업예정일	조건부 합격자

※ 단, 보호자는 지원자의 졸업예정일까지 근무기간이 역년으로 3년 미만인 경우 역년으로 3년이 되는 시점까지 근무해야 함

※ 조건부 합격자 : 졸업예정자 중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본인과 보호자(부모)의 지원자격은 미충족하였으나 필답에 합격하여 졸업시점에 모든 지원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합격통보를 받은 자

라. 자격인정 기준시점 -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1)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자의 외국고등학교 재학·체류기간 및 보호자(부모)의 근무·체류기간을 산출하여 지원자격 충족여부를 결정합니다.

마. 기타

- 1) 자격요건 기간 동안 보호자의 신분이동으로 자격 구분이 상이할 경우,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로 지원하고 지원자격 해당기간의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재외국민 지원 대상인 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전 부모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와 이혼 후 친권자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illegible]

9.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 재학기간 인정기준

가. 외국에서 초·중고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 외국 1개 국가에서 초·중등 전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학년제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예시 : 10년제, 11년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지원가능)
- ▶ 외국 2개국 이상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1개 국가 내 학제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학교에서 혼합 이수한 경우 포함)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제	미인정	다만,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을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할 경우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다만,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다만,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제	12학년까지만 이수한 경우 : 10~12학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3학년까지 이수한 경우 : 11~13학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다만,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학기)

- 1) 단, 외국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2)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11년 이상 초·중등과정을 수료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월반 또는 조기졸업 관련 사유서를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나. 기타

- 1)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2)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12년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10. 제출서류

가. 재외국민 제출서류 목록

번호	구 분	일반 재외국민									12년 해외 전교육 과정 이수자	비 고
		공 무 원	상 사 직 원	외국 정부 국제 기구 근무자	정부 유치 과학자 /교수 요원	현지 법인 근무자	현지 자영 업자	교육 출장 목적 체류자	해외 선교사	외국 영주 교포의 자녀		
1	입학원서	○	○	○	○	○	○	○	○	○	○	인터넷 접수
2	서류심사 지원서	○	○	○	○	○	○	○	○	○	○	인터넷 접수 후 출력
3	학력조회 동의서	○	○	○	○	○	○	○	○	○	○	인터넷 접수시 서식 다운로드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	○	○	○	○	○	○	
5	초등학교 성적증명서(학생부)	○	○	○	○	○	○	○	○	○	○	• 재학기간 명기 • 성적증명서에 재학기간이 명 기되지 않은 경우 재학증명서 별도 제출
6	중학교 성적증명서(학생부)	○	○	○	○	○	○	○	○	○	○	
7	고등학교 성적증명서(학생부)	○	○	○	○	○	○	○	○	○	○	
8	외국고교 학사일정표	○	○	○	○	○	○	○	○	○	○	※ 각주 참고
9	보호자 재직증명서	○	○	○	○	○		○	○	○		외국근무기간 명기
10	정부초청·추천서			○	○							
11	외국파견 교육·출장관련 증명서							○	○			
12	해외지사 설치인증서 또는 해외직접 투자신고·수리서 사본		○									
13	현지법인 법인등록증 사본					○						
14	사업자 등록증(해당국) 사본						○					사업기간 명기
15	보호자 현지법인 법인세 납부증명서					○						• 지원자격기간 마지막날 기준 역산하여 3년치 • 법인세 납부증명서 제출이 불 가능한 경우 보호자 세금납입 증명서 제출
16	보호자 세금 납입증명서						○					지원자격기간 마지막날 기준 역산하여 3년치
17	여권 사본(학생, 부, 모)	○	○	○	○	○	○	○	○	○	학생만	국적 및 사진이 있는 부분 복사
18	영주권 사본(학생, 부, 모)									○		영주권 취득일이 반드시 명기
19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부, 모)	○	○	○	○	○	○	○	○	○	학생만	
20	재외국민등록부 등본(학생, 부, 모)	○	○	○	○	○	○	○	○	○	학생만	현지 영사관 또는 온라인 발급
21	주민등록말소등본									○		
22	보호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	○		
23	출입국사실증명서 사실증명 발급신청 에 대한 위임장(학생, 부, 모)	○	○	○	○	○	○	○	○	○	학생만	본교 소정서식
24	혼인관계증명서										○	결혼이주민의 경우 제출
25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	해당자만 제출										중국인의 경우 중국공증 처에서 공증한 원본
26	제3국 수학인증서	해당자만 제출										보호자 근무 현지 한국영사관

※ 외국고교 학사일정표 : 해당 외국학교의 학사일정(학기시작 및 종료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와 상응하는 홈페이지 출력물 및 브로셔 등도 가능(홈페이지 출력 시 해당 웹사이트 주소 표기)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불필요

나. 새터민 제출서류 목록

- 1) 입학원서 1부
- 2) 북한이탈주민확인서(거주지 시·군·구 기관장 발행) 1부
- 3) 학력확인서(거주지 시·군·구 기관장 발행/국내고교 출신자가 아닌 경우) 1부
- 4) 고교졸업(예정)증명서(국내고등학교 출신자에 한함) 1부
- 5) 검정고시 합격증서(검정고시 출신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모집요강 발표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1) 1단계 전형 합격자만 서류를 제출합니다. 정해진 서류제출 기간 이전에 제출한 서류는 분실염려가 있으므로 기간엄수 바랍니다.
- 2)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본을 제출해야 할 경우 본교 입학관리실에 원본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원본대조필>을 받은 후 사본을 제출하고, 최종합격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3) 근무·체류기간 관련서류는 <지원자격요건 충족기간> 이상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학생부)는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총 수학기간 확인을 위하여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4) 모든 제출서류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나, 외국의 발급서류는 외국에서의 재학/근무/종료시점에 발급받은 것도 유효합니다.
- 5) 제출서류별로 성명이 다를 경우 해당국 법원이나 공관장이 발행한 <동일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6) 외국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또는 해당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또는 영문) 공증을 받은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중국어의 경우 중국정부 공증처에서 작성한 한글(또는 영문) 공증서를 함께 제출
 - ▶ 외국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는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날인」 또는 「재외교육기관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접수 기간 내에 제출
 - ▶ 교육부에서 인정한 재외한국학교는 영사 확인 없이 증명서 원본제출
- 7) 재외국민 지원 대상인 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전 부모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와 이혼 후 친권자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8) 입학원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9)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본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0)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기준이 미달할 경우 사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11) 조건부 합격자는 고교졸업증명서, 고교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과 보호자(부모)의 근무·거주·체류 관련 모든 서류(보호자 재직증명서, 보호자 세금 납입증명서, 외국파견 교육·출장 관련 증명서 등) 중에서 본인 해당서류를 졸업 직후 입학관리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혹은 전형기간 중 지원자와 보호자(부모)의 자격요건 상실 시 합격(입학)을 취소합니다.

㉠ 문의 및 연락처

구 분	내 용
문의처	서울캠퍼스 입학관리실
연락처	전화 : (02)2260-8861 / FAX : (02)2260-3696
주 소	(04620) 서울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본관 1층 동국대학교 입학관리실